

의안번호	2219141
의 퇴 인	김상훈 의원
회 답 일	2026.6.17.
추 계 번호	26E275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내집합투자기구 및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
과세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										
1	안 제91조의29(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)	○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- (국내집합투자기구) 집합투자재산의 60% 이상을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(소득공제) 2029.12.31.까지 국내집합투자기구에 투 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<table> <tr> <th>투자금액</th> <th>공제율</th> </tr> <tr> <td>3천만원 이하</td> <td>투자금액의 60%</td> </tr> <tr> <td>3천만원 초과</td> <td>1,800만원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이하</td> <td>+ 3천만원 초과분의 40%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초과</td> <td>2,600만원</td> </tr> <tr> <td>3억원 이하</td> <td>+ 5천만원 초과분의 20%</td> </tr> </table> - (기타) 투자일부터 3년 내 환매 또는 양도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	투자금액	공제율	3천만원 이하	투자금액의 60%	3천만원 초과	1,800만원	5천만원 이하	+ 3천만원 초과분의 40%	5천만원 초과	2,600만원	3억원 이하	+ 5천만원 초과분의 20%			
투자금액	공제율																
3천만원 이하	투자금액의 60%																
3천만원 초과	1,800만원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하	+ 3천만원 초과분의 40%				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	2,600만원																
3억원 이하	+ 5천만원 초과분의 20%																
2	안 제91조의30(고배 당기업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특 례)	○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에 대 한 과세특례 신설 - (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) 집합투자재산의 60% 이상 을 고배당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- (배당소득 분리과세)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 여 2029. 12. 31.까지 받는 배당소득(투자일부터 10년 이내 발생 배당소득에 한정)에 대해 보유기간별 저율 분 리과세 적용 <table> <tr> <th>보유기간</th> <th>세율</th> </tr> <tr> <td>2년 초과</td> <td>9.9%</td> </tr> <tr> <td>3년 이하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년 초과</td> <td>6.6%</td> </tr> <tr> <td>5년 이하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년 초과</td> <td>3.3%</td> </tr> <tr> <td>10년 이하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보유기간	세율	2년 초과	9.9%	3년 이하		3년 초과	6.6%	5년 이하		5년 초과	3.3%	10년 이하		
보유기간	세율																
2년 초과	9.9%																
3년 이하																	
3년 초과	6.6%																
5년 이하																	
5년 초과	3.3%																
10년 이하																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1조의29(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1조의30(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가.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(안 제91조의29 신설)

- 개정안은 거주자가 집합투자재산의 60%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(이하 ‘국내집합투자기구’라 함)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투자금액 구간별 3천만원 이하 60%,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0%,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%의 공제율 적용
-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려면 국내집합투자기구에 포함될 수 있는 금융상품 현황 및 해당 금융상품에 투자한 인원 및 투자금 규모, 투자자의 소득 구간별 소득공제·납부세액 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의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객관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및 상장지수펀드(ETF) 등이 국내집합투자기구에 포함

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나.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(안 제91조의30 신설)

□ 개정안은 거주자가 집합투자재산의 60% 이상을 고배당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(이하 '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'라 함)에 투자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○ 고배당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임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고배당기업 요건과 동일)

- ①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
- ② 배당성향(당기순이익 대비 이익배당금액 비율) 40% 이상
- ③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25% 이상 +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% 이상 증가

○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보유기간별 분리과세 세율은 다음과 같음

- 2년 초과 3년 이하 9.9% / 3년 초과 5년 이하 6.6% / 5년 초과 10년 이하 3.3%

□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려면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 현황, 해당 금융상품에 투자한 인원 수,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, 수익률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의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객관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